

경운대학교 특별학점에관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60조에 의거하여 특별학점 인정과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특별학점”이라 함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, 이 규정이 정하는 특별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말한다.

제3조(특별학점) ① 특별학점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인정한다.

1. 사회봉사활동
2. 어학연수
3. 전공연계 강좌

②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, 성적평가관 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당해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한다.

③ 특별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며, 전공연계 강좌의 경우 해당학부(과)에서 운영하는 교과목과 연계 할 경우 학부(과)의 이수구분으로 따른다.

제4조(사회봉사활동 특별학점) ① 사회봉사활동 특별학점의 이수 조건은 사회봉사 교과목 이론 수업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학기당 30시간(1일 5시간이내 인정)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운대학교 사회봉사 지원센터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어학연수 특별학점) ① 해외어학연수는 어학연수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가인정어학원·우리대학이 인정하는 외국의 어학연수기관 및 우리대학에서 개설하는 어학연수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② 해외어학연수의 경우 30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 인정하며,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하며 재학 중 6학점까지 인정한다.

③ 해외어학연수 학점 신청은 연수 종료 후, 학기 개시 전 별도 공고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부(과)장의 승인을 득한 후, 교무처에 신청한다.

1.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서
2. 해외어학연수 이수에 대한 어학연수 기관의 문서(이수 내역 표기)

제6조(전공연계 강좌 특별학점) ① 전공연계 강좌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가인정교육기관 및 우리 대학이 인정하는 연수기관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② 전공연수의 경우 15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 인정하며,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하며 재학 중 6학점까지 인정한다.

③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점수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득한 경우, 신청학기 성적(학점)으로 인정한다.

④ 전공연계 학점 신청은 연수 종료 후, 학기 개시 전 별도 공고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신청한다.

1. 전공연계 학점인정 신청서
2. 연수 이수에 대한 연수기관의 문서(이수 내역 표기)

⑤ 과목표기 방법은 학부(과) 개설과목의 전공연계 학점인정시 개설학부(과)의 개설과목명을 따르고, 학부(과) 개설과목이 아닌 경우 연계강좌(과정명)로 처리한다.

제7조(등록) ① 특별학점의 인정을 희망하는 자는 당해학기에 필히 등록하고, 수강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.

제8조(학점인정) ① 학생이 신청한 특별학점에 대해 관련학과의 심의를 거친 후, 교무처에서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학점인정은 당해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2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학칙 제40조에 의거하여 수강신청 학점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.

③ 특별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하되, 성적 평점평균 환산에는 제외한다.

④ 특별학점의 성적은 인정 Satisfactory(S), 미인정 Unsatisfactory(U)으로 표기한다.

⑤ 특별학점신청 가능한 시기는 인정과목 이수 후 1년 이내로 정한다. 단, 봉사활동특별학점은 당해학기에 한해서 인정한다.

제9조(특별학점 심의) ① 교무처는 특별학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특별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
2. 특별학점 해당 사항의 삭제와 추가 설치
3. 기타 특별학점에 관한 중요사항

제10조(공고)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적인 일정과 절차를 매 학기 초에 교무처에서 공고한다.

제11조(부정행위) ① 특별학점 취득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적발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 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점과 성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② 특별학점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학생상벌규정 등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.

제12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